

[별표 제2호] (제38조제2항 관련)

## 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 1. 작성기준

-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나. 발주청은 기술제안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와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자재 등의 장·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라. 기술제안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학술논문집·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홍보용 자료(팸플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 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에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기술제안검토서의 내용 등

-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